

순천대학교 중소기업경영연구소규정

제정 1986. 9. 26
개정 1992. 8. 10
개정 2012. 10. 25
개정 2013. 10. 0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」에 의하여 순천대학교중소기업경영연구소 (이하 '연구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2012.10.25)
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중소기업의 경영·무역 및 경제문제에 관한 이론적·실증적인 조사연구를 하고, 산업기술에 관한 제반문제를 산학협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개발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관련 분야에 있어서의 이론적·실증적인 조사 연구
2. 정기간행물의 발간과 국내외 도서자료의 수집 및 출판
3. 외부로부터 위촉된 경영·무역 및 기술에 관한 지도와 진단
4. 경영자 및 기술자의 교육훈련
5. 관련분야에 관한 연구발표회·강연회·전시회의 개최
6. 국내외의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와 협동연구
7.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자문과 건의
8. 산·학협동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
9.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이 연구소에 소장·부장·서무 등을 둘 수 있다.

② 소장은 이 대학교 경영학 분야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2012.10.25)

③ 부장(연구부장·출판부장)은 연구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.

(개정2012.10.25)

제4조(연구원 및 연구원보)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연구보조원, 객원연구원, 특별연구원,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.(개정2012.10.25)

② 각 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한다

(개정2012.10.25).

제5조(고문) ① 이 연구소에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은 이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, 연구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소장이 임명한다.

(개정2012.10.25).

제6조(특별회원) ① 이 연구소에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, 특별회원은 이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산학협동에 관심을 가진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의 신청에 따라 소장이 임명한다.(개정2012.10.25).

② 이 연구소의 연구원과 특별회원은 산학협동을 추진하여 경영 및 기술의 개선을 효율화하며 상호의

연구개발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, 이 연구소내 '산학협동연구회'를 둘 수 있다.

③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이 연구소의 간행물 송정, 도서 및 자료의 이용, 경영 및 기술상담, 학술강연회·세미나 참가 등에 우선적으로 대우한다.

④ 특별회원(기업회원·기관회원·개인회원)은 이 연구소에 연회비를 납부하며,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한다. (개정2013.10.02)

② 소장과 경영학분야의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(개정2012.10.25)

③ 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이 연구소의 기본운영 계획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내규의 신설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4.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8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지원금, 각종 위탁연구비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산학협동연구회 회칙) 산학협동연구회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다.

부 칙(1986. 09. 26.)

이규정은 1986년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2. 8. 10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(2012. 10. 2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2013. 10. 0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